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
2025. 6. 23(월) 10:00

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층 아동
눈 건강 증진 조례안
(의약과 소관)



행 정 재 경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층 아동 눈 건강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721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5. 5. 29.
- 라. 회부일자 : 2025. 5. 29.

2. 제안이유

관내 저소득층 아동의 눈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눈 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 및 의료비 등의 지원으로 저소득층 아동에게 적기에 치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력 교정 및 눈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제7조)

4.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3조, 제4조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 시력 저하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층 아동의 시력 교정 및 눈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 안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에 포함될 내용에 대하여
 -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의 기준에 대하여
 - 안 제6조에서는 시력검진, 교육, 안과 의료비 및 안경 구입비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안은 저소득아동의 눈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력 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아동기에 눈 건강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학습능력 향상과 삶의 질 제고는 물론, 시각장애 예방 측면에서도 공공성이 높은 정책이라 할 수 있음.
- 참고로 전국에 광주광역시 남구 1곳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최근 스마트기기 사용 증가와 야외활동 감소 등으로 인해 근시 등 시각 이상 유병률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아동 눈 건강을 위한 조기검진, 교육, 지원사업 등이 시의성 있게 추진 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저소득아동의 건강권 보장 및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자치입법으로 판단됨.
- 본 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소관부서에서는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 절차 등을 이행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임.
- 본 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 관계법령 1부. 끝.

아동복지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85호, 2025. 4. 1.,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삭제 <2016. 3. 22.>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16. 3. 2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복지·교육·문화 등의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복지·보건의료·교육·문화 등의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5. 10. 2.] 제4조